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적기

Issue Comment
2015.9.9

[지주회사/IT서비스]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dwsec.com

서윤석
02-768-4127
yoonseok.seo@dwsec.com

2015년 세법개정안 확정

전일(8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오는 11일 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 개정안 중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전환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의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는 적용기한을 3년 추가 연장(~'15.12.31 → ~'18.12.31까지)

2)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신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지원 목적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연계 추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 신설(~'18.12.31까지)

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 까지 이연,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② 기타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표 1 참고)

표 1. 지배구조 관련 2015년 세법개정안 요약

구분	조항	내용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시 특례 적용기한 연장(~'15.12.31 → ~'18.12.31 까지) :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선제적 사업재편 시 과세 특례(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특례(~' 18.12.31 까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사업재편 목적의 합병 후 중복자산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특례(~'18.12.31 까지) :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과세 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모회사, 자회사의 구조조정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 인수·변제 시 특례(~'18.12.31 까지) : 모회사, 채무인수 및 변제액 손금산입,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4, 40, 44조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 위한 자산양도, 자산 무상증여, 채무면제 시 특례(~'18.12.31 까지) : 자산양도, 자산수증,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과세이연(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평가 및 영향

동 세법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설립 및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하반기 법제화와 맞물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

한편 국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 결정 및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현물출자를 결정하기까지 평균 8개월 정도가 소요(표2)

상기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8년말까지므로 관련법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주회사 전환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통령 선거가 2017년말 실시되는 만큼 현물출자 일정까지 고려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적기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라고 판단됨

표 2. 지주회사 전환 발표 이후 현물출자까지 평균 8개월(약 247일) 소요

지주회사	지주회사 전환 발표	분할기일	지주-자회사 재상장	현물출자(유상증자)	지주 전환~현물출자
한라홀딩스	2014년 4월 7일	2014년 9월 1일	2014년 10월 6일	2014년 11월 6일	213일
한진칼	2013년 3월 22일	2013년 8월 1일	2013년 9월 16일	2014년 9월 23일	550일
한국콜마홀딩스	2012년 6월 4일	2012년 10월 1일	2012년 10월 19일	2012년 12월 11일	190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012년 4월 25일	2012년 9월 1일	2012년 10월 4일	2013년 5월 20일	390일
AK홀딩스	2012년 4월 24일	2012년 9월 1일	2012년 9월 17일	2012년 11월 14일	204일
삼양홀딩스	2011년 8월 10일	2011년 11월 1일	2011년 12월 5일	2012년 6월 1일	296일
코오롱	2009년 10월 15일	2009년 12월 31일	2010년 2월 1일	2010년 5월 24일	221일
케이씨그린홀딩스	2009년 9월 28일	2010년 1월 1일	2010년 1월 29일	2010년 5월 14일	228일
영원무역홀딩스	2009년 4월 14일	2009년 7월 1일	2009년 7월 30일	2009년 8월 31일	139일
일진홀딩스	2008년 4월 16일	2008년 7월 1일	2008년 8월 1일	2008년 9월 8일	145일
하이트진로홀딩스	2008년 4월 16일	2008년 7월 1일	2008년 7월 30일	2009년 7월 22일	462일
한진중공업홀딩스	2007년 5월 15일	2007년 8월 1일	2007년 8월 31일	2007년 10월 8일	146일
SK	2007년 4월 11일	2007년 7월 1일	2007년 7월 25일	2007년 8월 29일	140일
웅진	2007년 2월 15일	2007년 5월 1일	2007년 5월 31일	2007년 8월 2일	168일
CJ	2007년 6월 12일	2007년 9월 1일	2007년 10월 4일	2007년 11월 8일	149일
아모레퍼시픽그룹	2006년 3월 15일	2006년 6월 1일	2006년 6월 29일	2006년 10월 9일	208일
LG	2000년 11월 15일	2001년 4월 1일	2001년 5월 2일	2001년 11월 8일	358일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까지 평균 소요 시간					247일

주: 현물출자는 발표 공시일 기준,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대기기업집단 순환출자금융사 보유 현황 및 지주회사 전환 여부

순위	기업집단명	총수	순환출자	금융사	순위	기업집단명	총수	순환출자	금융사 보유
1	삼성	이건희	○	○	21	효성	조석래	X	○
2	현대자동차	정몽구	○	○	22	동국제강	장세주	X	X
3	SK	최태원	지주회사 전환(2007.7.3)		23	영풍	장형진	○	X
4	LG	구본무	지주회사 전환(2001.4.3)		24	미래에셋	박현주	X	○
5	롯데	신격호	○	○	25	코오롱	이웅열	지주회사 전환(2010.1.1)	
6	현대중공업	정몽준	○	○	26	한진중공업	조남호	지주회사 전환(2007.8.1)	
7	GS	허창수	지주회사 전환(2004.7.7)		27	KCC	정몽진	X	X
8	한진	조양호	지주회사 전환(2013.8.1) 진행 중		28	한라	정몽원	지주회사 전환(2014.9.2) 진행 중	
9	한화	김승연	X	○	29	한국타이어	조양래	지주회사 전환(2013.7.6)	
10	두산	박용곤	지주회사 전환(2009.1.1)		30	태광	이호진	X	○
11	신세계	이명희	X	X	31	대성	김영대	지주회사 전환(2011.1.1)	
12	CJ	이재현	지주회사 전환(2007.9.4)		32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	○
13	LS	구태희	지주회사 전환(2008.7.2)		33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X	○
14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	X	34	세아	이순형	지주회사 전환(2001.7.3)	
15	동부	김준기	X	○	35	이랜드	박성수	X	○
16	대림	이준용	○	X	36	태영	윤세영	X	X
17	부영	이중근	지주회사 전환(2009.12.30)		37	하이트진로	박문덕	지주회사 전환(2008.7.3)	
18	현대	현정은	○	○	38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지주회사 전환(2007.7.1)	
19	OCI	이수영	X	X	39	삼천리	이만득	X	○
20	현대백화점	정지선	○	X	40	한솔	이인희	지주회사 전환(2015.1.1)	

주: 공기업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향후 2년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적기로 판단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